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제처 해석 결과

법 제 처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 1.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1) 질의요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2) 회답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3) 이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

르면 대의위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위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위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은 대의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의위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위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위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

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감사 위촉에 관한 사항

### 1) 질의요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2) 회답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3) 이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조활동의 주체를 축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축산단체가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는 축산단체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대의위원회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산단체가 두는 것이며, 대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위원회가 아니라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위원회는 축산단체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은 대의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의위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것은 대의위원회의 업무로서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된 대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단체도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축산단체가 추천

한 자 중에서 대의위원회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축산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위원회의 감사 위촉 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감사를 위촉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3.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이 개의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질의요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위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 2) 회답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위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 3) 이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족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4.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1) 질의요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회답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이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